

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3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0월 28일
발 의 자 : 이정훈, 김경자(양천), 김생환,
김인호, 문형주, 박운기,
서윤기, 우형찬, 유동균,
유찬종, 이상묵, 장인홍,
조상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사립초등학교,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, 월 단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수업료 징수 방법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생이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, 그 수업료의 산정은 일할 계산으로 함(안 제4조제4항제3호)
- 나. 안 제4조제4항제3호의 신설에 따라 수업료의 산정을 일할로 계산한 학교의 경우 수업료의 반환도 일할로 계산함(안 제6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에 다음과 같이 제3호를 신설한다.

3. 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,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, 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징수방법) ①~③ (생략) ④ (생략) 1.~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징수방법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1.~2. (현행과 같음) <u>3. 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.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,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.</u>
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 (생략) ② <u>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</u>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<u>반환한다.</u>	제6조(수업료 등의 반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4조제4항제2호의</u>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<u>반환하고, 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.</u>